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홍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93호, 2020. 9. 8.)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고용노동부령 제293호(공포 : 2020. 9. 8.)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안내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훈련시간 ‘1,400시간→1,200시간’ 조정

- \*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 \*\* 원적교 학생의 훈련시간 인정여부는 「20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지침」에 따름

### 2.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종목 신설<시행일 : 2022. 1. 1>

#### 신설종목(명)

- ▶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2종목>

### 3.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2개 자격종목 폐지 <시행일 : 2023. 1. 1>

### 4. 조선기사, 특수용접기능사 2개 종목 분할 <시행일 : 2023. 1. 1>

기존 종목(명)	변경 종목(명)
▶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 특수용접기능사	가스텀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5. 자격종목 명칭 변경<시행일 : 2023. 1. 1>

기존 종목(명)	변경 종목(명)
▶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6. 시험과목 변경

- 교통산업기사 등 7개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시행일 : 2021. 1. 1부터>
- 금형기능사 등 18개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시행일 : 2023. 1. 1부터>
- 현행 용접기능사 등 11개 종목 필기 시험과목 변경에 따라, 아래 종목별 과목 면제 종료 일 부터는 그 이전에 취득한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다른 자격종목의 필기시험 상호면제 또는 과목면제 종료 됨

【 과목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사항 】

취득 자격종목	법 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21.1.1부터)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종목)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과목) 메카트로닉스
취득 자격종목	법 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23.1.1부터)
피복아크용접기능사 (現 용접기능사) 가스텀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現 특수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종목)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과목) 건축일반
	(종목) 건축목공산업기사 (과목) 안전관리
건축목공산업기사	(종목)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과목) 건축일반
	(종목)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과목) 안전관리
종자산업기사	(종목) 유기농업산업기사 (과목) 재배원론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종목) 제품디자인산업기사 (과목) 색채학
건축설비산업기사	(종목)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과목) 건축일반
조선기사	(종목) 일반기계기사, 농업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과목) 재료역학

### 7. 가스기능사 등 21개 자격종목의 실기시험 형태 변경(필답형·복합형 ↔ 작업형) 등

보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이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